

第269回國會
(定期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7年9月21日(金)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5.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7.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9.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
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6.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7.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3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環境·交通·災害등에 관한影響評價法 전부개정법률안
3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 의사일정 상정의 건 4
- 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강성중·천정배·변재일·정청래·서혜석·김낙순·권선택·김동철·서상기·양승조 의원 발의) 4
- 2.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이성권·김희정·박형준·권철현·남경필·김명주·이주호·한선교·최구식 의원 발의) 4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제종길·민병두·김명주·신상진·노현송·안상수·박상돈·김선미·정동채·이계경·이목희·장향숙 의원 발의) ... 4
-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정화원·김정권·이계안·이주호·최구식·김희정·김명주·서상기·나경원·황진하·안명옥·박순자·공성진·임인배·정갑윤·유정복·안택수·김용갑·배일도·이재창·정병국·김춘진·안상수 의원 발의) ... 4
- 5.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송영길·신명·배기선·이화영·이인영·박영선·김우남·한광원·노영민·홍미영·김춘진·이영호·이상경·조성래·박찬석·장향숙·정봉주·최규성·이경숙 의원 발의) 5
-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이목희·이원영·서혜석·김현미·장향숙·김영주·신명·선병렬·홍미영·유승희·한병도·정봉주·김선미·최철국·오영식 의원 발의) 5
- 7.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한명숙·최재천·이경재·이미경·홍미영·이광철·김영주·이경숙·정청래·이화영·김형주·배일도·조배숙·제종길·김태년·장향숙·선병렬·이은영·노웅래·윤원호·윤호중·유승희·김덕규·김부겸·안홍준·조경태·이목희·박병석·강창일·배기선·김춘진·이인영·박기춘·김동철·박명광·진수희·장복심·최철국정동채·오영식·서갑원·양승조 의원 발의) 10
-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한명숙·최재천·이경재·이미경·홍미영·이광철·김영주·이경숙·정청래·이화영·김형주·배일도·조배숙·제종길·김태년·장향숙·선병렬·이은영·유재건·윤원호·윤호중·유승희·단병호·김덕규·김부겸·안홍준·조경태·이목희·박병석·강창일·배기선·김춘진·이인영·박기춘·최순영·김동철·박명광·진수희·장복심·최철국·정동채·서갑원·양승조 의원 발의) 10
- 9.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한명숙·최재천·이경재·이미경·홍미영·이광철·김영주·이경숙·정청래·이화영·김형주·배일도·조배숙·제종길·김태년·장향숙·선병렬·이은영·노웅래·윤원호·윤호중·유승희·단병호·김덕규·김부겸·안홍준·조경태·이목희·박병석·강창일·배기선·김춘진·이인영·박기춘·최순영·김동철·박명광·진수희·장복심·최철국·정동채·서갑원·양승조 의원 발의) 10
-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한명숙·최재천·이경재·이미경·홍미영·이광철·김영주·이경숙·정청래·이화영·김형주·배일도·조배숙·제종길·김태년·장향숙·선병렬·이은영·노웅래·윤원호·윤호중·유승희·단병호·김덕규·김부겸·안홍준·조경태·이목희·박병석·강창일·배기선·김춘진·이인영·박기춘·최순영·김동철·박명광·진수희·장복심·최철국·정동채·오영식·서갑원·양승조 의원 발의) 10

11.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 · 한명숙 · 최재천 · 이경재 · 이미경 · 홍미영 · 이광철 · 김영주 · 이경숙 · 정청래 · 이화영 · 김형주 · 배일도 · 조배숙 · 제종길 · 김태년 · 장향숙 · 선병렬 · 이은영 · 윤원호 · 윤호중 · 유승희 · 단병호 · 김덕규 · 김부겸 · 안홍준 · 조경태 · 이목희 · 박병석 · 강창일 · 배기선 · 김춘진 · 이인영 · 박기춘 · 최순영 · 김동철 · 박명광 · 진수희 · 장복심 · 최철국 · 정동채 · 서갑원 · 양승조 의원 발의) 10
12.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 · 한명숙 · 최재천 · 이경재 · 이미경 · 홍미영 · 이광철 · 김영주 · 이경숙 · 정청래 · 이화영 · 김형주 · 배일도 · 조배숙 · 제종길 · 김태년 · 장향숙 · 선병렬 · 이은영 · 유재건 · 노웅래 · 윤원호 · 윤호중 · 유승희 · 단병호 · 김덕규 · 김부겸 · 안홍준 · 조경태 · 이목희 · 박병석 · 강창일 · 배기선 · 김춘진 · 이인영 · 박기춘 · 최순영 · 김동철 · 박명광 · 진수희 · 장복심 · 최철국 · 정동채 · 서갑원 · 양승조 의원 발의) 10
1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 · 한명숙 · 최재천 · 이경재 · 이미경 · 홍미영 · 이광철 · 김영주 · 이경숙 · 정청래 · 이화영 · 김형주 · 배일도 · 조배숙 · 제종길 · 김태년 · 장향숙 · 선병렬 · 이은영 · 윤원호 · 윤호중 · 유승희 · 단병호 · 김덕규 · 김부겸 · 안홍준 · 조경태 · 이목희 · 박병석 · 강창일 · 배기선 · 김춘진 · 이인영 · 박기춘 · 최순영 · 김동철 · 박명광 · 진수희 · 장복심 · 최철국 · 정동채 · 서갑원 · 양승조 의원 발의) 11
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 · 한명숙 · 최재천 · 이미경 · 홍미영 · 이광철 · 김영주 · 이경숙 · 정청래 · 이화영 · 김형주 · 배일도 · 조배숙 · 제종길 · 김태년 · 장향숙 · 선병렬 · 이은영 · 유재건 · 노웅래 · 윤원호 · 윤호중 · 유승희 · 김덕규 · 김부겸 · 안홍준 · 조경태 · 이목희 · 박병석 · 강창일 · 배기선 · 김춘진 · 이인영 · 박기춘 · 김동철 · 박명광 · 진수희 · 장복심 · 최철국 · 정동채 · 서갑원 · 양승조 의원 발의) 11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 · 한명숙 · 최재천 · 이경재 · 이미경 · 홍미영 · 이광철 · 김영주 · 이경숙 · 정청래 · 이화영 · 김형주 · 배일도 · 조배숙 · 제종길 · 김태년 · 장향숙 · 선병렬 · 이은영 · 유재건 · 윤원호 · 윤호중 · 유승희 · 단병호 · 김덕규 · 김부겸 · 안홍준 · 조경태 · 이목희 · 박병석 · 강창일 · 배기선 · 김춘진 · 이인영 · 박기춘 · 최순영 · 김동철 · 박명광 · 진수희 · 장복심 · 최철국 · 정동채 · 서갑원 · 양승조 의원 발의) 11
16.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 · 한명숙 · 최재천 · 이경재 · 이미경 · 홍미영 · 이광철 · 김영주 · 이경숙 · 정청래 · 이화영 · 김형주 · 배일도 · 조배숙 · 제종길 · 김태년 · 장향숙 · 선병렬 · 이은영 · 유재건 · 윤원호 · 윤호중 · 유승희 · 단병호 · 김덕규 · 김부겸 · 안홍준 · 조경태 · 이목희 · 박병석 · 강창일 · 배기선 · 김춘진 · 이인영 · 박기춘 · 최순영 · 김동철 · 박명광 · 진수희 · 장복심 · 최철국 · 정동채 · 서갑원 · 양승조 의원 발의) 11
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 · 한명숙 · 최재천 · 이경재 · 이미경 · 홍미영 · 이광철 · 김영주 · 이경숙 · 정청래 · 이화영 · 김형주 · 배일도 · 조배숙 · 제종길 · 김태년 · 장향숙 · 선병렬 · 이은영 · 윤원호 · 윤호중 · 유승희 · 단병호 · 김부겸 · 안홍준 · 조경태 · 이목희 · 박병석 · 강창일 · 배기선 · 김춘진 · 이인영 · 박기춘 · 최순영 · 김동철 · 박명광 · 진수희 · 장복심 · 최철국 · 정동채 · 서갑원 · 양승조 의원 발의) 11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 · 노영민 · 이시종 · 변재일 · 김혁규 · 이목희 · 박상돈 · 정성호 · 김재윤 · 백원우 · 이화영 의원 발의) 14
19.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임종인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정청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14
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김성조 · 김정권 · 신상진 · 강창일 · 안상수 · 정갑윤 · 이계경 · 박재완 · 정성호 · 김태환 의원 발의) 14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배일도 · 이경재 · 최철국 · 안명옥 · 김애실 · 신상진 · 김영덕 · 김춘진 · 서병수 · 이재오 · 김형주 · 진영 · 이목희 · 박계동 · 한선교 의원 발의) 14
2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24.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2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26. 建設勤勞者の雇傭改善等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27.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2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권경석 · 김병호 · 김양수 · 남경필 · 맹형규 · 박형준 · 배일도 · 신상진 · 이경제 의원 발의)	17
29.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제종길 · 단병호 · 배일도 · 우원식 · 조성래 · 김교홍 · 민병두 · 천정배 · 김영주 · 이목희 · 장복심 · 조정식 의원 발의)	17
30. 수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정진섭 · 신상진 · 정병국 · 이계경 · 윤두환 · 배일도 · 이경제 · 차명진 · 전여옥 · 이규택 · 서상기 의원 발의)	17
31. 수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조성래 · 강창일 · 양형일 · 제종길 · 홍미영 · 안홍준 · 윤원호 · 이목희 · 우원식 · 장향숙 · 배일도 의원 발의)	17
32.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3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3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3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3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37.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38.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39.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10시40분 개의)

○위원장 **홍준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홍준표** 먼저 법률안 상정시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미리 통보한 의사일정 중 제21항, 제27항, 제31항의 법률안 3건은 국회법상 상정시기가 충족되지 않았지만 법률안의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동일 법률안과 동시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오늘의 의사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9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확정해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법안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 · 강성종 · 천정배 · 변재일 · 정청래 · 서혜석 · 김낙순 · 권선택 · 김동철 · 서상기 · 양승조 의원 발의)

2.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 · 이성권 · 김희정 · 박형준 · 권철현 · 남경필 · 김명주 · 이주호 · 한선교 · 최구식 의원 발의)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제종길 · 민병두 · 김명주 · 신상진 · 노현송 · 안상수 · 박상돈 · 김선미 · 정동채 · 이계경 · 이목희 · 장향숙 의원 발의)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정화원 · 김정권 · 이계안 · 이주호 · 최구식 · 김희정 · 김명주 · 서상기 · 나경원 · 황진하 · 안명옥 · 박순자 · 공성진 · 임인배 · 정갑윤 · 유정복 · 안택수

· 김용갑 · 배일도 · 이재창 · 정병국 · 김춘진
· 안상수 의원 발의)

5.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 · 송영길 · 신명 · 배기선 · 이화영 · 이인영 · 박영선 · 김우남 · 한광원 · 노영민 · 홍미영 · 김춘진 · 이영호 · 이상경 · 조성래 · 박찬석 · 장향숙 · 정봉주 · 최규성 · 이경숙 의원 발의)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 · 이목희 · 이원영 · 서혜석 · 김현미 · 장향숙 · 김영주 · 신명 · 선병렬 · 홍미영 · 유승희 · 한병도 · 정봉주 · 김선미 · 최철국 · 오영식 의원 발의)

(10시42분)

○**위원장 홍준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김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제종길 의원과 정화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의사일정 제5항 선병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의원**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와 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료 근로자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장애근로자의 고용의무만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지원하며 장애인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을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준표** 제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제4항~제6항의 법률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한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각각 노트북 입력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상 6건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진훈**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의정 제1항~제6항까지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연령과 청소년유해업소의 직업소개 금지 기준이 되는 연령을 '18세 미만자'에서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 것입니다.

우선 취업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연령의 경우 개정안에 따를 때 만 18세 이상이고 만 19세 미만인 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 연령과 상치되고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의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미 법률에 반영이 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종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또는 사회 전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차별 없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현실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또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 전체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대상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생산원료를 저가로 공급하는 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매책임이 없는 저가의 원료 공급만으로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직업재활시설 등의 경영안정, 고용창출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저가의 기준도 불분명한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자를 현행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 이외에 '제3자'를 추가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가 제3자인 경우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 외에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상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근거로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에 맞게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예방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법률안 자체에 대하여 경영계의 반대가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추진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를 거치는 것으로 부처협의를 마치고 당정협의 등 절차를 생략한 채 6월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정부는 7년간에 걸쳐 충분히 논의를 진행시켰고 독자적인 법률안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의원입법의 제출 방식을 취함으로써 법률안 제출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의의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노무 공급 형태에 대하여 보호가 필요한 부분의 관할영역 설정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호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노동관련법상의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 노동법체계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미래의 노동시장 모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령이 될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동법이나 제도의 변화가 고용과 임금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노사 간의 힘겨루기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률안이 오히려 사업자 측에게 새로운 형태의 고용으로 나가게 하여 대량 해고 사태를 촉발시키거나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인정할 경우 이들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해 당사자 간의 대립이 크므로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준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법안심사소위에 계신 분들은 법안심

사소위에 가서 토론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종결하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이경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6건의 법률안을 한꺼번에 후딱 넘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위원장 홍준표** 6건을 한꺼번에 후딱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이경재 위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강행을 하시니까……

○**위원장 홍준표** 질의하세요.

○**이경재 위원** 김진표 의원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문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신 바 있고 지난번에도 법률안 제출 이전부터 여기서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것이 근로자냐, 아니냐 하는 개념 규정에서부터 이것은 위탁 등의 민사계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단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법적 보호를 마련하는 것이 옳으나, 그르냐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7년간의 논의를 거쳐서 진행시켜 왔는데 정부에서 법률안을 내려면 여러 가지 당정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을 생략한 채 국회의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해서 이제 올라왔거든요.

우선 노동부장관께서 정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영향을 미칠 이 사안을 왜 정부에서 절차를 밟지 않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이 법을 성안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공약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 법안을 성안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대립된 견해가 있어서 계속 논의를 했는데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부에서, 저희 노동부에서 안을 성안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6월에 가서 비로

소 입장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입장을 정리해서 그때 정부입법으로 하면 6월에 심의도 불가능하고 이 중요한 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단 한 번 심의해 가지고 통과될 것 같지 않아서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겠다는 심정에서, 다른 법도 이미 올라와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6월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급박한 사정 때문에 김진표 그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도움을 받아서 의원입법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법을 빨리 심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경재 위원** 이것이 하루아침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벌써 7년 동안이나 논란이 된 건데, 급히 일어난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 자체 내에서도 기업을 다루는 산자부나 또는 공정거래위 이런 데 의견하고 노동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변칙적으로 이렇게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로서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입법인 것은 맞고, 단지 급해서 과거에도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온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재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안으로, 정부안이 아니고 노동부안이지요. 지금 참여정부안에서도 반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에서 변칙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노동부가 특수 근로자들에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사자료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노동부가 법 취지(목적)에 맞게끔 조사했는데 오히려 노동부가 하려고 하는 방향하고 다르게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가령 골프장 캐디의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8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이것을 쉬쉬하고 얘기하지 않다가 제가 자료를 얻어 가지고 이게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본인들도 반대하고 찬성하지 않는 것을 구태여 보호하겠다고 해서 입법

화하는 의도가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우선 이 안이 정부안이 아니고 노동부안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특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심의를 거쳐서 정부 차원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정부안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결론을 냈고 정부 차원에서 빨리 입법화하자는 의미에서 의원입법으로 하기로 동의했지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특고 종사자들 중 이 법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1차 조사를 해 보니까 골프장 캐디의 경우는 거의 80%가 반대를 했지요. 그다음 보험설계사는 한 절반 정도가 반대했고, 반면에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70%가 찬성했기 때문에 특고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자세히 보시면 특고 종사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했느냐 하면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특고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법의 유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특고 종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요건에 맞고 또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만 해 주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특고 종사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원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재 위원** 노동자를 분류할 수 있는 범위를 시행령에 넣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본질적인 노사관계를 해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으로 정할 문제를 시행령에 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우선 법적으로 특고라고 하면 위탁 등의 민사계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가령 보험설계사 같은 경우 계약을 해서 1억 원어치의 계약을 완성하면 자기가 몇 %를 먹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 능력에 의해서 어떤 설계사는 1억 원, 100억 원까지도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월급 수준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특고와 관련된 소송이 있을 때 거의 다 대법원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계속 존재하는 데요. 저도 특고들이 부당한 대우와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생각해야지 억지로 노동법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특고 중에서 골프장 캐디의 예를 들면 하급심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고 또 부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고는 근로자로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와 자영인 사이의 중간개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는 없지요. 저희들은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산업구조의 변화를 볼 때 정말 새로운 고용형태로서 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인도 아닌 중간 단체가 있다고 보고 그 중간 단체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법을 제정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보호영역을 근로자가 아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법을 입법했습니다.

○**이경재 위원** 장관님이 법률가 출신이신데 헌법 제33조제1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관계 내지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일반결사의 자유가 아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로3권은 결사의 자유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이 권리의 향유주체는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의 근로자에 대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부분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캐디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근로자적 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80%나 반대하고 있는데 억지로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시 논란할 것이 아니고 소위에서 적절히 잘 다뤄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高羲善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 홍준표** 잠깐만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죽 했는데, 지금 장관께서 급했다, 급한 법안이어서 부득이하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의원입법으로 했다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마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정기국회까지 3개월의 시간이 있으니 정부법안이 되려면 정식의 절차를 거쳐 달라 제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원래 정부제출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관계부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형식상의 당정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정협조업무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정부입법이 되려면 여기 심사를 거쳐야 돼요. 다섯 번째,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돼요. 여섯 번째, 차관회의규정상 차관회의를 거쳐야 돼요. 마지막으로 헌법규정에 있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나와야지 소위 정부입법이에요. 지금 장관께서 아까 이경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 여섯 가지 조항 중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하다가 만 그런 사안을 자꾸 정부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원입법이 발의되고 난 뒤 절차를 보면, 법이 발의되고 나면 제일 처음에 법제처장이 소관 부처에 의원입법 발의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지금 법제처에서 노동부에 이 법률안을 통보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소관부처에서 의원입법 법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노동부 자체 검토는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원입법이 발의되더라도 소관부처의 장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진표 의원 법안이 발의되고 난 뒤에도 소관부처의 장끼리, 산자부나 여러 장끼리 의견을 청취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 법률안을 제출할 때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원입법을 제출한 후에도 사후절차도 거치지 않은 법을 지금 장관께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정부안이다 이런 식으로 강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도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어 줬어요. 장

관께서 요청해서 공청회까지 열어 줬어요. 열어 주면서 석 달의 기한이 있으니 이 중요한 법에 대해서 정부 입법절차를 밟아 달라, 여섯 가지, 일곱 가지 규정을 밟아 달라, 그리고 의원입법으로 했으면 관련 부처끼리 협의해 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하지도 않고 오늘 또 오서 가지고 시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 석 달의 시간을 줬어요.

물론 장관께서 애로사항이 있고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개인적인 의지는 강합니다마는 국회 속 기록에 남는, 그런 역사적 기록에다가 자꾸 정부안이라고 이런 식으로 강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은 형식상 의원발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정부안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을 뿐이고요. 이것은 형식상으로 봐서는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의원입법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에서 정부의 의견을 묻는다면 아마 답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밟는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지 위원장님께서 가능하면 정부에서도 다시 안을 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한 번 의원입법으로 냈는데 똑같은 내용을 다시 정부가 낸다는 것이 좀 우습다 해 가지고 안 낸 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부처의 불찰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똑같은 안을 또 낸다는 것이 좀 어색해서 안 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장관님, 의원입법이더라도 소관부처의 장은 업무 관련 부처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동부장관께서는 산자부 재경부 이런 데 대해서 의견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입법 들어오고 난 뒤에 지금 석 달가량 되었는데도 그 조회절차를 안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절차까지도 거쳐 보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의견이 없으면……

고희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高義善 委員 지난번에 특고법이 처음 저희 위원회에 들어왔을 적에 관련되는 업종들을 민생탐방 기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골프장 캐디 문제 또 학습지 또 레미콘 또 보험회사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다 해 봤더니 레미콘은 제가 보기에 물론 비정규직도 문제가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공급과잉에서 오는 겁니다. 메이저급 회사 몇 개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회사는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바꾸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사실상 캐디나 학습지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왜 반대하느냐를 따져보니까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노사가 다 같이 아니면 한쪽이라도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노사가 다 반대하는 게 많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혹시 캐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고소득을 벌면서 세금을 안 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보면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비정규직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준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법안 심사소위에 넘겨서 정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7.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한명숙·최재천·이경재·이미경·홍미영·이광철·김영주·이경숙·정청래·이화영·김형주·배일도·조배숙·제종길·김태년·장향숙·선병렬·이은영·노웅래·윤원호·윤호중·유승희·김덕규·김부겸·안홍준·조경태·이목희·박병석·강창일·배기선·김춘진·이인영·박기춘·김동철·박명광·진수희·장복심·최철국·정동채·오영식·서갑원·양승조 의원 발의)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한명숙·최재천·이경재·이미경·홍미영·이광철·김영주·이경숙·정청래·이화영·김형주·배일도·조배숙·제종길·김태년·장향숙·선병렬·이은영·유재건·윤원호·윤호중·유승희·단병호·김덕규·김부겸·안홍준

·조경태·이목희·박병석·강창일·배기선·김춘진·이인영·박기춘·최순영·김동철·박명광·진수희·장복심·최철국·정동채·서갑원·양승조 의원 발의)

9.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한명숙·최재천·이경재·이미경·홍미영·이광철·김영주·이경숙·정청래·이화영·김형주·배일도·조배숙·제종길·김태년·장향숙·선병렬·이은영·노웅래·윤원호·윤호중·유승희·단병호·김덕규·김부겸·안홍준·조경태·이목희·박병석·강창일·배기선·김춘진·이인영·박기춘·최순영·김동철·박명광·진수희·장복심·최철국·정동채·서갑원·양승조 의원 발의)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한명숙·최재천·이경재·이미경·홍미영·이광철·김영주·이경숙·정청래·이화영·김형주·배일도·조배숙·제종길·김태년·장향숙·선병렬·이은영·노웅래·윤원호·윤호중·유승희·단병호·김덕규·김부겸·안홍준·조경태·이목희·박병석·강창일·배기선·김춘진·이인영·박기춘·최순영·김동철·박명광·진수희·장복심·최철국·정동채·오영식·서갑원·양승조 의원 발의)

11.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한명숙·최재천·이경재·이미경·홍미영·이광철·김영주·이경숙·정청래·이화영·김형주·배일도·조배숙·제종길·김태년·장향숙·선병렬·이은영·윤원호·윤호중·유승희·단병호·김덕규·김부겸·안홍준·조경태·이목희·박병석·강창일·배기선·김춘진·이인영·박기춘·최순영·김동철·박명광·진수희·장복심·최철국·정동채·서갑원·양승조 의원 발의)

12.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한명숙·최재천·이경재·이미경·홍미영·이광철·김영주·이경숙·정청래·이화영·김형주·배일도·조배숙·제종길·김태년·장향숙·선병렬·이은영·유재건·노웅래·윤원호·윤호중·유승희·단병호·김덕규·김부겸·안홍준·조경태·이목희·박병석·강창일

· 배기선 · 김춘진 · 이인영 · 박기춘 · 최순영 · 김동철 · 박명광 · 진수희 · 장복심 · 최철국 · 정동채 · 서갑원 · 양승조 의원 발의)

1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 · 한명숙 · 최재천 · 이경재 · 이미경 · 홍미영 · 이광철 · 김영주 · 이경숙 · 정청래 · 이화영 · 김형주 · 배일도 · 조배숙 · 제종길 · 김태년 · 장향숙 · 선병렬 · 이은영 · 윤원호 · 윤호중 · 유승희 · 단병호 · 김덕규 · 김부겸 · 안홍준 · 조경태 · 이목희 · 박병석 · 강창일 · 배기선 · 김춘진 · 이인영 · 박기춘 · 최순영 · 김동철 · 박명광 · 진수희 · 장복심 · 최철국 · 정동채 · 서갑원 · 양승조 의원 발의)

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 · 한명숙 · 최재천 · 이경재 · 이미경 · 홍미영 · 이광철 · 김영주 · 이경숙 · 정청래 · 이화영 · 김형주 · 배일도 · 조배숙 · 제종길 · 김태년 · 장향숙 · 선병렬 · 이은영 · 유재건 · 노응래 · 윤원호 · 윤호중 · 유승희 · 김덕규 · 김부겸 · 안홍준 · 조경태 · 이목희 · 박병석 · 강창일 · 배기선 · 김춘진 · 이인영 · 박기춘 · 김동철 · 박명광 · 진수희 · 장복심 · 최철국 · 정동채 · 서갑원 · 양승조 의원 발의)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

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 · 한명숙 · 최재천 · 이경재 · 이미경 · 홍미영 · 이광철 · 김영주 · 이경숙 · 정청래 · 이화영 · 김형주 · 배일도 · 조배숙 · 제종길 · 김태년 · 장향숙 · 선병렬 · 이은영 · 유재건 · 윤원호 · 윤호중 · 유승희 · 단병호 · 김덕규 · 김부겸 · 안홍준 · 조경태 · 이목희 · 박병석 · 강창일 · 배기선 · 김춘진 · 이인영 · 박기춘 · 최순영 · 김동철 · 박명광 · 진수희 · 장복심 · 최철국 · 정동채 · 서갑원 · 양승조 의원 발의)

16.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

대표발의)(신명 · 한명숙 · 최재천 · 이경재 · 이미경 · 홍미영 · 이광철 · 김영주 · 이경숙 · 정청래 · 이화영 · 김형주 · 배일도 · 조배숙 · 제종길 · 김태년 · 장향숙 · 선병렬 · 이은영 · 유재건 · 윤원호 · 윤호중 · 유승희 · 단병호 · 김덕규 · 김부겸 · 안홍준 · 조경태 · 이목희 · 박병석 · 강창일 · 배기선 · 김춘진 · 이인영 · 박기춘 · 최순영 · 김동철 · 박

명광 · 진수희 · 장복심 · 최철국 · 정동채 · 서갑원 · 양승조 의원 발의)

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

대표발의)(신명 · 한명숙 · 최재천 · 이경재 · 이미경 · 홍미영 · 이광철 · 김영주 · 이경숙 · 정청래 · 이화영 · 김형주 · 배일도 · 조배숙 · 제종길 · 김태년 · 장향숙 · 선병렬 · 이은영 · 윤원호 · 윤호중 · 유승희 · 단병호 · 김부겸 · 안홍준 · 조경태 · 이목희 · 박병석 · 강창일 · 배기선 · 김춘진 · 이인영 · 박기춘 · 최순영 · 김동철 · 박명광 · 진수희 · 장복심 · 최철국 · 정동채 · 서갑원 · 양승조 의원 발의)

(11시11분)

○위원장 **홍준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제17항 신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신명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각각 노트북의 입력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진훈**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서 17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대상이 2008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나 공무원의 경우는 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

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업·종업 시각의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양육문제는 전체 사회적인 문제로서 제도 도입과 함께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치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근로자의 성별, 연령 등에서 차별금지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조제3항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근로자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헌법에서 포괄적으로 평등의 원칙과 차별금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차별금지사유를 예시조항으로 해석하므로 구체적으로 연령·국적 등의 차별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 부여에 있어 차별금지사유에 국적을 포함하여 외국인을 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훈련기회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행하는 사업에 고용상 차별 개선을 위한 비용, 모성보호 및 직장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비용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기금의 용도로 추가하고자 하는 고용상 차별 개선을 위한 비용, 모성보호 및 직장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비용은 모두 기금의 본래의 용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규정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 정년 등 고용상 차별금지 의무가 있으며, 모성보호 및 직장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보육지원 등의 의무가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이를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면 사업주가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

여 기금을 사용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호휴가를 청구하는 때에 사업자는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장애여성근로자의 추가적인 산전후휴가 외에 별도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임신기간 동안 월 1일의 유급 태아검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휴가나 태아검진휴가는 개인 휴가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업주에게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되어 여성고용 기피사유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는 개정안과 같이 태아검진을 위해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임신 중인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기본원칙으로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 의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고, 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사업주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주성 존중 등 그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과 같은 고용에서의 평등도 기본원칙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고용평등 증진 등의 지원·촉진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기본원칙에 고용평등에 대한 별도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중복적인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국적,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

이나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외에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근로자 복지 부문에서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개정안은 고용상 발생할 수 있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의 해소와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추가하여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는 근로자의 채용에서부터 배치, 교육훈련 등 다양한 주제가 망라되고 있으므로 차별금지사항과 일과 가정에서의 양립 지원 사항과 같은 개정안 사항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 안에 근로자의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등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법 제4조제2항에서 이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안에서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구체적 차별 금지사유를 다시 나열할 필요는 적어 보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기존의 차별대우의 금지사유인 인종, 종교, 성별, 정당 또는 신분 외에 연령, 신체적 조건, 국적, 고용형태를 추가하여 더 많은 사유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노조의 자주성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자율적 판단으로 일부 조합원을 우대하는 등 차이를 두는 것을 차별적인 취급으로 보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우선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조합의 분리 및 가입 반대 등 차별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비정규직 관련법의 차별시정제도로 논의가 되고 있으나 고용형태는 그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격차를 반영한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조건 등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달

리 정할 수도 있고 평등기준의 적용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균등한 처우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존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에 연령·신체적 조건 및 국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신체적 조건의 경우 특히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남녀고용평등법도 모집과 채용에서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으로 하되 그 지급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정률제로 지급하게 되면 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 특히 저소득 근로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있고 현재 50만 원 정액제인 육아휴직급여를 정률제로 변경할 경우 하한액을 50만 원 이하로 내리기가 어려우며 이 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4524억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률제보다는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급여 수준을 높여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준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상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 위원님.

○**단병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 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노동부에 요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명 의원이 제출하신 남녀고용평등법하고 정부가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냐 하면 배우자 출산휴가인데 신명 의원 같은 경우에 유급으로 되어 있고 정부는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노동부에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3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했을 때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연차별로 볼 때 267억, 285억, 304억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무급 휴가로 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1일~5일의 휴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의 500대 기업 같은 경우에 한 35%가 이미 아버지 출산휴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 보면 유급휴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연봉제라든가 월급제라든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출산휴가로 간다고 해서 책정된 임금에서 그것을 삭제하고 주는 데는 없거든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 월급이나 연봉제로 책정되어 나가기 때문에 없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연차별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산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저희들이 이 법안을 심의하기로 해서 단협상으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연봉이라든가 월급으로 책정되어서 감액되지 않고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실제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이 어떤 것인지,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한테 소위 심사할 때까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정확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따른 비용의 문제들도 같이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기술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출하

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노동부에서는 소위 위원들하고 전체 위원들께 다 그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노영민·이시중·변재일·김혁규·이목희·박상돈·정성호·김재윤·백원우·이화영 의원 발의)

19.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

(임종인·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정청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김성조·김정권·신상진·강창일·안상수·정갑윤·이계경·박재완·정성호·김태환 의원 발의)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

(배일도·이경재·최철국·안명옥·김애실·신상진·김영덕·김춘진·서병수·이재오·김형주·진영·이목희·박계동·한선교 의원 발의)

2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建設勤勞者の雇傭改善等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26분)

○**위원장 홍준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임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배일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내지 제27항 정부가 각각 제출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이 제출한 법안은 유인물로 대체도록 하고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정부제출 법률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노동부장관 이상수**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6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 제명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의 방법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3일간의 무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넷째, 육아휴직 및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법령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고용정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등 5개 법률에 대해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개

의 법률안 모두 법 문장을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했으며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준표** 노동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내지 21항의 법률안 이 4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각각 노트북 입력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진훈**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서 24항까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4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사업을 퇴직연금사업자의 범위에 편입시키려는 것입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는 재무의 건전성 및 인적·물적요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재원을 맡고 있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아직은 시행 초기이므로 사업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제도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실태 파악 및 감독을 통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 확대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노동행정 경력자 등에게 부여된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시험의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노동행정 경력자 등에게 일부 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일반 수험생과의 경쟁을 제한하여 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행정 경력자 등에게 공인노무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은 장기간의 노동행정과 노동 관련 업무를 통하여 축적된 경험

과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역별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임금·물가 수준 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적으로 노동시장이 그리 넓지 않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크며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한의 기준으로 기준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함으로써 사실상 최저임금액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배일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기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인 3년과 맞추어 산업재해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보존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의 계산은 재해보상이 끝난 날부터 기산되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재해사고가 발생한 날부터이므로 양자는 필연적으로 같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후 이에 대한 재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재해의 보상과 관련된 중요서류를 2년간 보관한 후 폐기하였으나 재해사고 발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를 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부터 26항까지는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3일의 무급 휴가를 주되 출산

후 30일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출산휴가제의 도입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휴가의 유·무급 문제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준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위원님.

○제종길 위원 김성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법으로도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 최저임금법을 낮추면 직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고용기회가 확대된다는 취지로 이 법안이 적용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최저임금법을 정한다고 하면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노동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물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실질임금이 지역별로 편차가 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실질임금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일용 생각해볼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 그렇게 했을 때 특정 지역의 생활수준 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착되어 가지고 균형발전의 취지에는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 점에 관해서 이미 연구용역을 쥘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바로 전 19번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실제로 노동행정인 경우 굉장한 경험을 필요로 하고 특히 공인노무사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공

인노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자, 더 이상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법률안은 법률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관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권경석·김병호·김양수·남경필·맹형규·박형준·배일도·신상진·이경재 의원 발의)

29.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제종길·단병호·배일도·우원식·조성래·김교홍·민병두·천정배·김영주·이목희·장복심·조정식 의원 발의)

30.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정진섭·신상진·정병국·이계경·윤두환·배일도·이경재·차명진·전여옥·이규택·서상기 의원 발의)

31.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조성래·강창일·양형일·제종길·홍미영·안홍준·윤원호·이목희·우원식·장향숙·배일도 의원 발의)

(11시40분)

○위원장 **홍준표**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 정진섭 의원과 조성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 2건,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전부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홍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원구역 내 용도지구별 허용 행위 기준 위임법령을 상향 조정하고 도립·군립 공원 원상회복예치금 고시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며 자연공원 안의 출입금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허가 취소, 사업 정지·변경 사유를 구체화하며 철거조치명령, 대집행 사유를 명확히 하면서 그 대상자를 확대하고 매수청구 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그동안 자연공원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매수청구 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시행령에서 판정기준을 “매수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공시지가의 50%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의 소유자 등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50%라는 기준도 그 자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국가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한 잠정적인 것으로서 예산이 허용하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제종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동 법률안은 유치원에서부터의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안 제7조는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

육진홍·지원 위원회를 두어 환경교육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지원기구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둘째, 안 제8조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권고,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 등의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셋째, 안 제12조는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려는 기관·단체에 대해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환경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안 제13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는 한국환경교육센터, 시도에는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 법률안의 내용은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환경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들의 친환경 사회 역량 제고 등을 위한 환경교육의 강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 법률안이 제정법이고 관련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부터 의견제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이경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인 학교환경교육의 진흥 또 사회환경코디네이터 자격제도, 사회환경교육기관의 등록제도 및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기관들로부터 이견이 있으므로 이들 기관들과의 의견조정과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다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정진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환경정비구역 지정의 효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일부배제 및 특별대책지역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에 해당하는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완화 등입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생활기반 시설 건축 등에 있어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구역지정을 확대하고 아울러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행

위제한도 확대하는 것은 기존의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 등의 지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체계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도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과 상수원의 수질오염 방지라는 양 측면을 고려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조성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안 제52조제1항은 현행법에 전용상수도 인가의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 제63조제2항은 인가신청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 대한 인가 취소, 그 효력의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로 현행법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1호~제24호에 걸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 제78조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시험 업무를 검정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현행의 한국수자원공사 외의 검정 관련 전문기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관리 단위를 통합·일원화하여 시험관리의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경우도 통합관리대상 자격목록에 포함되었는바 동 자격시험 업무를 검정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시험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재 위원 제가 지난 3월에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제정 법안을 발의했는데 당시 세종길 의

원께서도 법률안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논의를 제종길 의원께서 낼 때까지 좀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기다려 왔는데 드디어 아주 좋은 작품을 상정하게 되어서 환영하고 훌륭한 법안을 준비해 주신 제종길 의원님 노고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제종길 의원님 법안을 죽 읽어 보니까 세세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지원하자는 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양 엑스포인가, 그때 남쪽 섬나라에서 오신 총리의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국토가 가라앉는다, 우리나라를 구해 달라” 하는 호소를 보면서 기후 변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경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환경교육을 강화·확대해 나가자 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종길 의원님 안도 그렇고 학교환경교육 부분에 대하여는 교육부가 “남의 영역을 왜 침범하느냐” 하는 부서이기주의에 입각해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제종길 의원께서는 제가 지적하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을 추가를 하셨는데 사회환경교육기관의 등록제라든가 코디네이터 자격제라든가 환경교육센터 설치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고 기구 확장 문제가 들어가니까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에서 현재 반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5년마다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환경 문제가 지구적으로 아주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5년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것이 작지만 큰 것인데,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제종길 위원 먼저 질문 주신 의견에 대해서부터 답을 드리면 실제로 환경부의 여러 가지 정부 계획들이 5년간 진행된 상황을 보고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법안에 표시한 것이지만 실제로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고 하면 5년 단위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

니다.

자세히 말씀을 좀더 드리면 교육부에서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이라고 보고 환경부가 관장하는 법안에서 학교환경교육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한데 환경부에서는 아마 부서 간 의견을 조정할 당시, 실제로 환경교육이 활발하지 않고 그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학 등에 환경교육학과를 만들어 놓고도 그 출신 교사들이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또 제대로 연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전문 환경교사들이 실제 환경교과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설령 이 법에서 그 항목의 존치가 어떻게 되든 간에, 환경부에서는 그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셔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이 법에서도 강하게 그 내용을 존치시켜 놓든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장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환경부장관 이규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참고로 이경재 의원님, 제종길 의원님 두 분이 환경교육 관련 아주 훌륭한 법안을 냈습니다. 이 두 분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0월 1일날 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진섭 위원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예, 정진섭 위원님.

○정진섭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낭독해 주신 요약된 것이 속기록에 기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제가 죽 읽어 봤는데 컴퓨터 단말기에 들어 있는 긴 내용이 속기록에 기재가 되는 것인지, 어느 쪽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홍준표 단말기에 들어 있는 내용이 속기록에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구두로 말한 것은 회의록에 기재가 되고 단말기는 첨부자료로 들어갑니다.

그때 한번 논의해 주시지요, 법안심사소위에서.

○정진섭 위원 예, 사실관계에 있어서 조금 다른 표현이 있어서 바로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법안소위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그러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4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이 법률안들을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2.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7.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8.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9.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55분)

○위원장 **홍준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제39항 정부가 각각 제출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이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규용**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차관도 같이 신임 인사 잠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예, 그러십시오.

차관이 오늘 새로 왔어요? 임명이 되었어요?

○환경부차관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장관 이규용** 먼저 지난 청문회 때 저에게 보내 주신 충고와 격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참여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을 잘 마무리하여 미래 세대에게 부끄럼이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준표** 이 설명 끝나고 난 뒤에 차관 올라와서 간단히 위원님들한테 인사하세요.

○**환경부장관 이규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차관 경력 한번 봅시다.

자료 있습니까?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 같아서……

○**위원장 홍준표** 오늘 처음 나왔어요. 오늘 임명 됐어요.

○**환경부장관 이규용** 오늘 아침 9시에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인사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기국회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오늘 환경부 소관 법률안 심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의 제명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통합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개선하도록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을 미리 정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스코핑(Scoping) 절차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간이평가 절차를 도입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토록 하고 평가서 등에 대한 공개규정의 신설 등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폐기물관리정책을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에서 발생억제와 자원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의 개념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둘째, 제품 및 개발사업의 자원 순환성 향상,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로이 규정하거나 강화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습니다.

둘째,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어 등을 쉬운 말로 고치고 문장부호나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 전용으로 그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은 환경으로 유출될 우려가 거의 없으므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둘째, 현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3년 경과 후 고시함에 따라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전사고 및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결과를 바로 고시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취급제한물질과 동일하게 관리되었던 취급금지물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조·수입·판매 등의 금지를 명문화하되, 예외적으로 시약의 수입 또는 영업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대강 수계법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도로·철도를 건설하는 국책사업 등의 터널공사 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환경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명확히 하는 등 토지매수 집행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으며,

셋째, 그동안 공공수역에서 물을 취수하면서도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하천유수 사용자를 부과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물 사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수계관리위원회 위원을 조정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동 법률안들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준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9항까지 정부가 제출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각종 영향평가 중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현행 사업자 신청주의에서 의무제

로 확대하며,

셋째,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하고,

넷째,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는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를 개선하며,

다섯째,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협의기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하나로서 관리·감독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개정사항의 검토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안 제10조 내지 제12조는 스코핑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모든 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스코핑을 실시하도록 하고,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스코핑제도는 영향평가 시 여러 항목과 범위 중에서 관련되는 항목 및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영향평가의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인바, 이를 확대하고 평가항목·범위 결정의 효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코핑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는 일층 새로운 부담을 과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동 제도를 3년간 실시해 보고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는 이른바 규제일몰제 방식으로 법안이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30조 내지 제33조는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 초안과 평가서를 하나로 한 간이평가서에 의하여 의견수렴과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그동안 평가서 작성·협이에 과다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간이평가절차 해당요건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에서의 해당요건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자칫 정식절차가 형해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자원순환에 대한 정의와 기본원칙을 신설하면서 사업자의 책무조항을 보완하고,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항을 신설하며,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 시행 시 자원순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제품의 제조자 등은 부품 등의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며,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지금까지 폐기물의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에서 발생억제와 에너지 회수 등 자원화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약간의 자구수정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2건의 개정안은 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몇 가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10조제1항은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고,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 면제절차인 면제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면제확인의 실익이 없는 확인물질에 대해서 면제확인절차 없이 바로 유해성 심사 면제대상이 되도록 하여 절차상의 편의 제공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개정안 제13조제1항 단서규정은 유해성

이 있는 “유독물”이나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관찰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일반물질과 달리 유독물과 관찰물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고시함으로써 유독물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개정안 제33조 및 제34조는 취급금지물질에 대해 수입 또는 영업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예외적으로 시약에 대하여도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행법상 수입 및 영업의 허가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을 구분하여 위해성이 큰 취급금지물질의 허가요건을 개정안과 같이 강화하여 유해물질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정내용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문장을 한글화하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38항,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9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변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의 예외로서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추가하며, 물이용부담금 부과 의 형평성을 위하여 부과대상자를 하천수의 사용자로 확대하고, 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차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금년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금년도 8월 3일 개정·공포된 한강수계법에서 이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을 보전하고 도로·철도 건설 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책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며, 물이용부담금 부과 의 형평성 제고 및 사용자부담원칙의 취지를 살리고 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조정 기능이 강화되어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위원님!

○제종길 **위원** 정부가 제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제10조제4항에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중에서 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자료, 분해성에 관한 자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외국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설명자료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부장관 **이규용** 화학물질은 리치에서 아시겠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어떤 독성물질이 들어 있는가를 공인된 시험방법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한 자료들로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런 시험기관들을—GLP라는 건데요—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들에 대해서 공적인 효력을 주는 거고 또 반면에 우리나라의 것도 외국의 GLP를 인정받으면 반대로 또 외국에서, OECD라든지 이런 데서 GLP로 인정받은 기관의 자료는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니까 OECD 국가의 실험실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우리나라 자료로 인정한다 이 얘기입니까?

○환경부장관 **이규용** 그렇습니다.

○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4조의2(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것인데요.

일전에 먹는 물 시험기관의 위장시험성적 발급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또 일부 기관들이 이름만 바꿔서 위장된 새로운 기관으로 변칙 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기왕

에 시험기관 지정취소라는 항목이 들어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먹는물관리법에 시험기관이 지정취소 당할 경우 일정기간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제한하는 그런 법을 제출해 놓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지요?

○**환경부장관 이규용** 이 경우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위 심사과정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취소당할 정도로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일정한 기간 동안 새로운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그 연구원뿐만 아니라 소속된 연구자들도 그렇게 해야 이것이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아까 장관께서 EU 리치사업과 관련하여 시험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관련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 이규용** 지금 기본계획 방향은 있는데 사실 이번 예산에서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관계 부처하고 합동으로 리치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활용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러한 기반들이 갖추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종길 위원** 지금 장관께서는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유해화학물질 시험기관의 능력 또 시험연구자들의 역량을 보면 OECD국가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환경부장관 이규용** 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종길 위원** 국내에 8개 기관이 겨우 인정받고 있는데 그중에 전체항목, 앞으로 우려되고 있는 항목을 분석하는 시험기관은 하나도 없고 그중에 한 10개 전후 정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제10조제4항인가요, 그런 OECD국가의 실험실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바로 쓰게 되면 아마 지금 민간시험기관들이 살아남을 방법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독성문제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엄격한 기준이나 질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GLP라고 했나요, GLP에 우리가 해당되면 우리도 시험 생산된 자료를 수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역량이 되어야 수출하지요. 장관께서 예산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 환경부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 부분에 예산이든 인력이든 확보하도록 하고 이런 법안을 바꿔야지 경쟁력도 있고 우리나라 시험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법안이 너무 성급하지 않나, 환경부의 조치에 비해서……

환경부에서 그건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소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때 방금 제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환경부장관께서 보완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유의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이 법률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39건의 법률안을 상정해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모두 회부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오늘 회부된 법률안들을 10월 1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부차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안홍준 위원** 위원장님!

인사하시기 전에 장관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 인사 할 때 장관께 협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이규용** 예, 협의 당연히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그러면 동의를 하는 절차는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규용** 예.

○**안홍준 위원** 동의를 하셨습니까?

○**환경부장관 이규용** 예.

○**안홍준 위원** 제가 경력을 봤는데 나이는 45세입니다. 아마 지금 국장도 45세보다 나이가 많은 국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행정고시를 하고 한 이십몇 년간 근무한 국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력이라는 게 청와대비서관 외에 한국도시연구소 연구부장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부장입니다.

청와대야 누구 마음대로 자기 비서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명색이 차관인데 어려운 행정고시를 하고 사무관부터 국장까지, 이사관까지 되는데 적어도 이십몇 년 안 걸립니까?

여기 열심히 일하시는 국장 분이냐 또 실장, 관리관급들도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임기가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당연히 내부승진으로 차관을 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경력을 가지고 환경부 부처하고 무슨 경력이 저거하다고 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까?

○**위원장 홍준표** 안홍준 위원님, 차관 임명은 대통령이 전권으로 하시는 것이고 장관이 동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고 그것은 지금 장관한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안홍준 위원** 따질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위원장 홍준표** 협의가 아니고 그것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고, 차관까지 되면 그것은 대통령 임명 사항이지 장관이 어떻게 차관을 임명합니까?

○**안홍준 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5개월밖에 안 남은 임기에 특히 연말에, 지금 우리가 법안소위를 또 해야 됩니다. 법안소위는 차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부처 간에 차관이 같이 함께 협의하지 않습니까, 법안소위 심사 때.

그러면 위원들이 부족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차관의 그동안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차관이 무슨 능력으로 위원들을 설득하고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이규용**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됐습니다.

안홍준 위원님 뜻은 전달이 됐고요.

○**안홍준 위원** 나는 차관 되시는 분도 사양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준표** 차관 인사말씀 하십시오.

○**환경부차관 김수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부차관에 임명된 김수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연륜이나 경력 모두 부족합니다. 그런데 신입 이규용 장관

님 모시고 여러 과제들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엄정한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준표** 지금 안홍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차관은 법률공부 좀 더 하시고, 많이 하셨겠지만, 국회 정책공부 더 하시고 오늘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와서 환경부의 입장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도록 실력 물론 갖추었겠지만 연마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환경부차관 김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해서 법률안 등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고희선	단병호	박근혜	배일도
신기남	신명	안홍준	우원식
이경재	정진섭	제종길	조성래
홍준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전문위원	윤진훈

○정부측 참석자

환경부장관	이규용
차관	김수현
정책홍보관리실장	김상일
재정기획관	이재현
환경정책실장	문정호
자연보전국장	이재홍
대기보전국장	고윤화
수질보전국장	홍준석
상하수도국장	윤종수
자원순환국장	전병성
노동부	

장	관	이	상	수
정책홍보관리본부				
본부장		정	종	수
재정기획관		박	찬	형
고용정책본부				
본부장		송	영	중
노동보험심의관		이	우	룡
직업능력개발심의관		이	채	필
고용평등심의관		김	태	홍
산업안전보건국장		전	운	기